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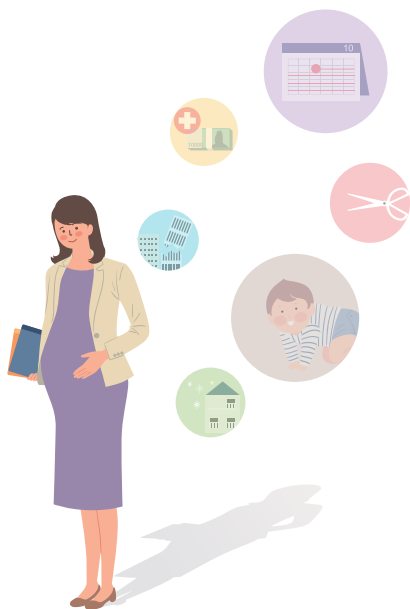
2021년

www.moel.go.kr

일하는  
엄마아빠를 위한  
출산·육아지원



고용노동부



일하는 엄마와 아빠의 부담을 줄이고  
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 
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**엄마와 아빠의  
출산과 육아를 응원합니다!**

## 목 차

### 1 출산

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	04
배우자 출산휴가급여	05
예술인·특고종사자 출산전후급여	06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	07

### 2 육아기

육아휴직급여	08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	09
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	10

### 3 사업주지원

모성보호 관련 사업주 지원	11
----------------	----



#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
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 
'출산전후휴가' 꼭 챙기세요



## 지원대상

- 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
※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

## 지원내용

- ➔ 출산전후휴가기간 월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원) 지급
  -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: 90일분(다태아 120일) 지급
  - 대규모기업 근로자 : 30일분(다태아 45일) 지급
- ➔ '21.7월부터는 기간제·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



## 신청기간

- 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(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)



## 신청방법

- ☞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- ☞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

## 출산전후휴가란?

- ➔ 사업주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(다태아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, 출산 후에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활용을 지원하고,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#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
배우자의 출산을 돕도록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.



## 지원대상

→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 
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
※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※ 우선지원대상기업: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 
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(중소기업 등)



## 지원내용

→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**최초 5일분 지원**  
(상한액 382,770원)



## 신청기간

→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



## 신청방법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
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

## 배우자 출산휴가란?

→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(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,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)



# 예술인·특고종사자 출산전후급여

예술인·특고종사자에게도  
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합니다!



## 지원대상

-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중 출산 여성

### ※ 특고 적용직종

(**21.7월부터 적용**)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기사, 방과후강사, 건설기계종사자, 화물차주  
(**22.1월부터 적용**) 퀵서비스, 대리운전



## 지원요건

-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
  - 출산(유산·사산)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
  -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이유로 노무 미제공



## 지원내용

-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% 출산전후 90일(다태아 120일)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
  - ※ 상한 월 200만원, 하한 [예술인] 월 60만원, [특고] 월 80만원



## 신청기간

- 출산(유산·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

## 신청방법

- ☞ 고용보험 홈페이지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
- ☞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



#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 
출산급여로 부담을 덜어드려요!



## 지원대상

→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

### 1인 사업자

-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(부동산임대업 제외)
-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
- ※ 다만,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

###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

-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

###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

-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
-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
-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



## 지원금액

→ 총 150만원

※ 유산·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



## 신청기간

→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

## 신청방법

- ☞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- ☞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



# 육아휴직급여

육아휴직급여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!



## 지원대상
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
  - ※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



## 지원내용

-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
  - 첫 3개월 :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
  - 4~12개월 : 통상임금의 50%(상한 120만원, 하한 70만원)
-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 (상한 250만원)로 상향하여 지급(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)



## 신청기간

-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(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)



## 신청방법

- ☞ 고용보험 홈페이지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
- ☞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

## 육아휴직이란?
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.
- '21.11.19.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





#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요!



## 지원대상

- 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
- ※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

## 지원내용

- ➔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에 대한 급여 지급
  - (주 5시간) 통상임금(월 상한액 200만원)의 100%
  - (나머지 단축분) 통상임금(월 상한액 150만원)의 80%



## 신청기간

- 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(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)



## 신청방법

- ☞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- ☞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

##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
- 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,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~35시간이며, 단축기간은 1년입니다.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)
- ➔ 임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


#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

코로나19 관련,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돌봄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!



## 지원대상

-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아래 사유로 (무급)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  - ㉠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  - 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등이 휴업·휴원·휴교,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(원)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  - 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등교, 등원,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  - 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

## 지원내용

-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, 1일(8시간) 5만원 지원



## 신청기간

- '21.4.5.(월) ~ '21.12.10.(금) \* '21년 한시 지원  
(분할 또는 일괄 신청 가능)



## 신청방법

- ☞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- ☞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

## 가족돌봄휴가란?

- 근로자가 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)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(무급)휴가로,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합니다.



## 모성보호 관련 사업주 지원

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 
사업주를 국가가 지원합니다!



### 지원대상

-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이하 '육아휴직등')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,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



### 지원내용

-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(간접노무비 지원)

-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

※ 인센티브 :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최초 ~ 세 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월 10만원 추가지원

- 대체인력지원금(인건비 지원)

-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
※ 인수인계기간 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


### 신청기간

- ①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: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
- ② 나머지 금액: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(대체인력지원금) 또는 6개월(간접노무비)이 지난 날부터 신청
- ※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는 일괄 지급



### 신청방법

☞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
☞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

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
**국번없이 1350**

 고용보험 홈페이지  
**www.ei.go.kr**

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
**www.moel.go.kr**

